

2025년도 우수 정보보호기술(제품서비스) 지정제도 접수 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)에 의거 정보보호 기술제품·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·제품·서비스를 보유한 벤처 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4월 1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

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

1. 사업 목적

- 정보보호 분야 유망 新기술·제품·서비스의 발굴·지원을 통한 민간 차원의 신기술 R&D 투자 활성화 및 판로개척 등 성장 지원

2. 신청 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5년 4월 1일(화요일) ~ 2025년 4월 30일(수요일)

- ※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, '25년 4월 30일(수) 18:00 이후에 도착한 신청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

□ 신청자격

- 정보보호 벤처기업*에서 제로트러스트, AI, 클라우드, 지능형 CCTV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·개량한 물리보안, 정보보안, 융합보안 등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(이하 “우수 정보보호기술등” 이라 함)를 보유

*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'벤처기업확인서'를 보유한 자

※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개사 선정(창업 7년이하: 3개사, 7년 초과: 7개사)

□ 신청(지원) 제외 대상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
- 양도·양수, 부도,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
- 부당노동행위, 불공정거래행위, 입찰 담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그 밖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□ 지정 주체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□ 전담 기관 : 한국인터넷진흥원

□ 지정 유효 기간 :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(이후 효력 자동 상실)

□ 지정 시 혜택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 지정서, 지정마크, 지정현판
- 지정기업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여
-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공모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우대
- 정보보호 기술기업 설명회, 구매상담회 참가 연계 등 홍보 지원
- 정부 부처, 지자체 등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의 수요연계형 판로지원
- ※ 지원사업 가점 부여, 장관상 시상, 공공 판로개척 지원(창업 7년이하 기업 우선적으로 지원) 등의 지정 혜택은 세부 추진 일정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. 평가 방법 및 기준

□ 평가방법

- 1단계 : 자격요건 검토(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 검토)
- 2단계 :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검토 및 발표심사
※ 발표 일시 및 장소, 질의응답 시간 등은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별도 안내 예정

□ 평가기준

- 신규성, 독창성, 사업화가능성 평가(붙임 참조)
 - 최고점과 최저점 제외한 배점 합산 평균 70점 이상 시 지정

4. 제출처 및 제출서류

□ 제출처

- 신청방법 : 이메일(woosu@kisa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제출
- 문의처 :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정책팀 제도운영 담당자
(☎ 061-820-3214, ✉ woosu@kisa.or.kr)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필수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수 정보보호기술(기술·제품·서비스) 별 지정 신청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 공문 1부 - 지정신청서,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- 신청인 본사 사업자등록증 1부 - 벤처기업확인서 1부 - 신청 기술·제품·서비스 대상 매출 증빙자료 1부(해당시) -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(유효기간 내) - 최근 3년(2022년~2024년) 재무제표 각 1부 • 우수 정보보호기술(기술·제품·서비스) 발표자료 1부
추가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기술(NET), GS 인증, 신속확인서 등 성능평가 결과 및 그밖에 정보 보호기술등에 대한 평가·검사·인증 결과 증빙서류 사본 1부(원본대조필) •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/실용신안 증빙서류(특허명세서 포함)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등록특허, 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에만 제출 증빙 • 외부 지출 연구비 증빙서류 1부(원본대조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계약서, 협약서 등 제출 증빙 • 정부부처 포상 및 시상 증빙서류(원본대조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지정신청 기술과 관련된 경우에만 제출 증빙 • 그밖에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자료

※ 신청서류는 반드시 PDF 형태로 원본대조필 날인(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) 후 소속 회사의 전자메일을 통해 제출

※ 필수서류와 추가서류를 각각 1부씩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

※ 지정신청 및 관련 서류는 5MB이하로 압축/분리하여 제출

5. 신청 시 유의사항

- 하나의 기술로 기술·제품·서비스에 중복 지원할 수 없음
- 최종 평가 결과 적격 기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지정신청서 검토를 통해 전담기관이 신청인에게 제출 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, 신청인은 전담기관 보완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
- 신청인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나 각종 증명(빙)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하여 지원받은 지원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함
- 특허증은 지정 신청하는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해당하는 특허증만 제출

[참고]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의한 벤처기업 요건

벤처유형	요건	확인기관
혁신성장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○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	벤처기업협회
예비벤처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○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	
연구개발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○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 제17조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	
벤처투자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○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○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% 이상 <p>※ 적격투자기관 :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, 한국벤처투자, 벤처투자조합, 농식품투자조합*, 신기술사업금융업자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창업기획자 (액셀러레이터)*, 개인투자조합, 전문개인투자자(전문엔젤), 크라우드펀딩*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, 일반은행, 기술보증기금*, 신용보증기금*, 신기술창업전문회사*,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*,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*,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, 외국투자회사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**</p> <p>※ *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(21.2.12)이후 투자유치 건(입금일 기준)에 한하여 인정 ※ **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(23.7.4)이후 투자유치 건(입금일 기준)에 한하여 인정</p>	

[별표 1]

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기준(제5조)

1. **신규성** :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또는 해외 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이 산업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도전적인 기술(기술·제품·서비스)임을 평가

구분	평가 항목	평가 기준
신 규 성	기존 기술과의 차별성	처리공정·원리 등의 차별성 및 해외에서 도입된 기술에 대한 차별화 수준(유사성) 평가
	기술 진보성	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성능 품질이 우수하거나 편의성 및 편리성, 경제성 등의 향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

2. **독창성** : 성능 품질 및 편리성, 경제성 등을 토대로 기존 기술과 비교를 통해 기술 가치가 우수한 기술임을 평가

구분	평가항목	평가 기준
독 창 성	기술 가치성	기존에 구현되거나 공표된 기술에 대한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를 평가
	혁신 원천기술성	기술 및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잠재성을 지닌 원천특허 가능성을 평가
	기술 발전성	향후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
3. **사업화 가능성** : 기술 구현 및 완성도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 및 상용화 가능성을 판단

구분	평가항목	평가 기준
사업 화 가능 성	기술 완성도	기술 성숙도(TRL*) 등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가능성 등의 평가 * R&D의 기술개발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설정 및 정량적인 평가 기준
	시장규모 및 성장성	국내외 수출 및 신규시장의 잠재 시장규모 정도 및 향후 성장성을 평가
	사용 제품 및 시제품 성능 평가 인증	국가 공인 성능평가 기관 또는 관련 산업 분야의 영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서의 성능 및 기능에 대한 평가 인증 결과
	투자 가능성	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가치에 대한 평가

※ 관련 근거 : 우수 정보보호기술등·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-54호)(2018.8.17.) [별표1]